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1992. 6. 16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6월 2일

○ 회부일자 : 1992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 79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6. 15) 상정

2. 제안설명의 오지

(제안설명자 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

가. 개정이유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이 없는 읍성군에 읍성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992. 3. 1자로 폐교된 맹동국민학교 틈틈은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촌본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조차 읍성군 맹동면 틈틈리 335번지와 읍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에 "읍성학생야영장" 및 "읍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을 설치하고자 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늘어가는 농촌의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 를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음성군 맹등국민학교 통등분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촌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하여 "음성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기관설치에 필요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오지 : "없음"

5. 토론 오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오지 : "없음"

8. 실시드그서 철판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 그른 대비표